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의 안<br>번 호 | 15320 |
|------------|-------|

제출연월일 : 2025. 12. 17.

제 출 자 : 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 클러스터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양도신고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7제1항 전단 중 “제5조의4제2항”을 “제5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제5조의4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5조의8제1호 중 “제5조의4제2항”을 “제5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의4제2항”을 “제5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학·연 클러스터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br>(생 략)<br><u>&lt;신 설&gt;</u>            |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br>(현행과 같음)<br>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br>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br>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br>통지하여야 한다.<br>③ 시 · 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br>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br>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br>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br>을 말한다) 내에 신고수리 여부<br>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br>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br>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br>다.<br>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 · 취<br>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br>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br>다. |
| <u>②</u> · <u>③</u> (생 략)                                     |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br>같음)   |
|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br>① 시 · 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br>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br>① -----<br>----- 제5조의4제4항 -----  |



